

[별지 제8호 서식(병)]

사업연도	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(병)	사업자등록번호
법인명		

1. 비과세등 (조세특례제한법)

① 구 분		② 근거법조항	코드	③ 금액
비과세	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	법 제13조	01	
	㉒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	법 제14조	02	
	㉓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	법 제15조	03	
	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	법 제49조	04	
	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배당소득 비과세	법 제55조	05	
	㉖		06	
	㉗ 합 계		10	

2. 익금불산입·손금산입 (조세특례제한법)

④ 구 분		⑤ 근거법조항	코드	⑥ 결산조정액	⑦ 세무조정액	⑧ 합계(⑥+⑦)
익금불산입	㉘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	법 제39조	11			
	㉙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따른 익금불산입	법 제41조	12			
	㉚ 수탁기업체의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	법 제41조의2	71			
	㉛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 익금불산입	법 제44조	13			
	㉜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	법 제45조	14			
	㉝ 기업간 주식교환에 따른 익금불산입	법 제46조	15			
	㉞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	법 제60조제2항	16			
	㉟ 분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	법 제61조제3항	17			
	㊱ 수도권생활지역의 지역 이전공장 양도차익 익금불산입	법 제63조의2제3항	72			
	㊲ 수도권생활지역의 지역 이전분사 양도차익 익금불산입	법 제63조의2제3항	73			
㊳		74				
㊴	합 계		20			
손금산입	㉠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	법 제8조	21			
	㉡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	법 제23조	22			
	㉢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	법 제38조	23			
	㉣ 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따른 손금산입	법 제39조	24			
	㉤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 손금산입	법 제44조	25			
	㉥ 기업개선작업에 따른 손금산입	법 제45조	26			
	㉦ 기업간 주식교환에 따른 손금산입	법 제46조	27			
	㉧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	법 제52조	28			
	㉨ 기부금의 손금산입	법 제73조	29			
	㉩ 정치자금의 손금산입	법 제76조	30			
	㉪ 농업협동조합 등의 양도차익 손금산입	법 제84조	31			
	㉫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	법 제100조	32			
	㉬ 폐기물예치금 등의 손금산입	법 제104조	33			
	㉭		34			
㉮	합 계		40			

3. 특별부가세 이월과세·과세이연 (조세특례제한법)

⑨ 구 분		⑩ 근거법조항	코드	⑪ 금액
이월과세	㉯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	법 제31조	41	
	㉺ 현물출자에 따른 특별부가세 이월과세	법 제38조	42	
	㉻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이월과세	법 제50조제1항제1호	44	
	㉼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	법 제84조제3항	43	
	㉽		45	
㉾	합 계		50	
과세이연	㉿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	법 제33조	51	
	㊀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따른 과세이연	법 제47조	52	
	㊁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	법 제60조	53	
	㊂ 법인분사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	법 제61조	54	
	㊃ 목장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	법 제70조	55	
	㊄ 5년이상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	법 제71조	56	
	㊅ 농어민지원시설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	법 제84조제2항	57	
	㊆ 수도권생활지역의 지역 이전공장 특별부가세 과세이연	법 제63조의2제4항	59	
	㊇ 수도권생활지역의 지역 이전분사 특별부가세 과세이연	법 제63조의2 제4항	76	
	㊈		77	
㊉	합 계		60	

2226-82311일
2000. 2. 개정

210mm×297mm
(신문용지 54g/m² (재활용품))

작 성 요 령

1. ⑥결산조정액란

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(별지 제15호 서식)에 기입하지 아니하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.

2. ⑦세무조정액란

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(별지 제15호 서식)에 기입하여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.

3. ⑬ 내지 ⑲란은 이월과세적용신청서(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)상의 ⑱란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(시가)에서 ⑳란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.

4. ㉑ 내지 ㉗란은 과세이연신청서(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)상의 ㉘ 과세이연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.